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-6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0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어문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(안 제3조제1항)
- 나.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신설 (안 제3조의2제5항)
- 다. 국민권익위원회 '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 마련 (안 제3조의2제6항 및 제7항)
- 라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어문 수정

## 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- 조례시행 후 기금의 여유자금(325,000천원)을 일반회계로 전출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3. 7. 4. ~ 7. 24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- 성별 구분, 성별 고정관념,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  
음으로 원안에 동의함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 1부.

5) 비용추계서 1부.

**법무팀 의견** :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 
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과,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 
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공약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##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

【자치법규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】

### ■ 평가대상 조문 ■

#### 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① ~ ④ 생략

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### □ 평가기준

○ 이해충돌 가능성(제척, 기피, 회피, 해촉 규정)

※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【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-4170('12.11.16)】

### □ 현황 및 검토사항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(감사담당관-11654, 2012.11.21)를 반영하여 개정 조례안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, 기피, 회피, 해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되어 있음.

### □ 검토결과 : 원안동의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 치 법 규 명	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		
평 가 담 당	감사담당관	( 행정 7 급 )	박주희
입안주무부서	청소행정과	통 보 ( 조 치 ) 일	2013. 7. 30.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조 치 사 항	
• 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제점 및 개선방안</li> <li>- 이해충돌 가능성</li> </ul>	• 원안동의	

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리에 관하여”를 “관리에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금운영”을 “기금운용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구청장은 기금의 선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

제3조의2제4항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연임할 수 있으며”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3조의3제3항 중 “재적의원”을 “재적위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6제2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마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공무원연금관리공단”을 “공무원연금공단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.

③ 이 조례 제3조의2제5항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관 리에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구성) ① (생략) 1.·2. (생략)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마다 <u>기금운영</u>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 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기금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기금운영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금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 운용·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

현행	개정안
<p>제3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<u>재적의원</u>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재적위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의6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<u>회계년도</u>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시와 함께 <u>마포구의회</u>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3조의6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회계연도</u>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</u> ----- -----</p>
<p>제8조(대여금액 및 대여한도) ① 대여금액은 <u>공무원연금관리공단</u>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대여금액 및 대여한도) ① - ----- <u>공무원연금공단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3조1항(안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 여유자금의 과다 적립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(안)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됨(2012.10.26.)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기금전출금	325,000					325,000
	소계(b)	325,000					325,000
□ 총 비용(a-b)		△325,000					△325,000

#### 4. 재원조달 방안 (해당없음)

#### 5. 기타의견

-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세입은 발생하지 않음
- 과거 5년 및 향후 10년의 세입 대비 세출의 현황을 파악 후 향후 기금운용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출금을 결정함

#### 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이효진
연락처	02-3153-9215